

—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—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설치
- 행정조직 개편과 신규행정 소요인력에 따른 보정정원사용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1,402명 ⇒ 1,445명(43명 증원)

• 기관별 정원조정

구분	계	본 청	의 회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현행	1,402	532	25	79	139	258	369
조정	1,445	567	25	80	142	260	371
증 감	+43	+35		+1	+3	+2	+2

• 직급별 정원조정

구분	합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			기 능 직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
	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
현행	1,402	1	1,030	1	10	71	238	326	247	137	308	3	25	43	93	144	1	34	28	
조정	1,445	1	1,080	1	10	72	253	336	259	149	302	5	25	41	92	139	1	34	27	
증감	+43		+50			+1	+15	+10	+12	+12	△6	+2		△2	△1	△5			△1	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명시(제3조관련, 별표)
-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규칙으로 정함(제4조관련 신설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시행지침 (2004. 12. 18)
- 행자부 자제12200-247('03. 5. 9)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